



(주) 신성기업	산 소	광검점사(부서)	산소	신성기업
(제 2안) 공 고 (안)		작성일	1979. 1. 19	12월
서울특별시 공고 제		작성부서	환경	
KS 표시 정지 처분 공고				
공업표준화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 처분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				
1979. 1. 19				
서울특별시 감				
1	허가 번호 :	1643		
2	허가 일자 :	78. 5. 22		
3	제조업체명 :	(주) 신성기업		
4	대표자 :	최 종 규		
5	소재지 :	영등포구 문래동 3가 84-3		
6	규격 번호 :	KSM 1101		
7	품 명 :	산 소		
8	정지기간 :	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때까지		
9	표시정지사유 :	KS 규격 기준 미달		
10	기준미달 항목 :	산소 10%		
(제 3안)				
수신 : (주) 신성기업				
제목 : 동 전				
1. 당시 사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78. 12. 14일 귀사의				

공상감사시 채취한 산소에 대해 외부시험을 실시한 결과 KS 규격에 ~~기준~~ 미달로 판명되어 공법 표준화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 내용과 같이 "KS 표시 정지" 처분하오니

2. 처분기간 중에는 동 제품이 대하여 KS 표시를 하지 할 것이며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 처분사유가 개선된 경우에는 관계자호를 첨부 행정처분 해제요청을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3. 만일 위의 KS 표시 정지 처분이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공법 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<sup>중단</sup> "허가 취소" 할 것이니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(끝)

(제 4안)

수신: 공법진흥청장

참조: 화심규격과장

제목: 동 건

1. 당시 관내 (주) 신성기업에 대해 사후관리공장 검사시 채취한 산소에 대한 외부시험결과 KS 기준미달로 판명되어 별첨 공고와 같이 KS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(끝)

(제 5안)

수신: 문화공보관

발신: 공법과장

제목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를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2부 (공)

(제 6안)

수신: 수신처 참조

제목: 공고송부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를 송부하야 업무에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공

수신처: 나(2-10) 상공부 조판침

국방부 조판본부 고압가스 보안협회